

# 감 사 위 원 회

## 주 의 요 구

**제 목** 특정제품(고강도네트)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미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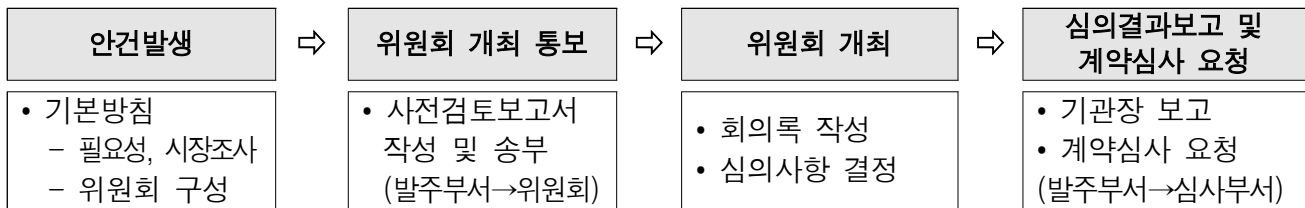
**관 계 기 관** 관악구(공원녹지과)

**내 용**

관악구(공원녹지과, 이하 ‘발주자’라 함)에서는 2016. 2. 24. L기업(이하 ‘시공자’라 함)과 “2016년 산악구조대 계곡 산사태 예방공사”를 도급계약(금액 264백만원) 맺어 같은 해 5. 10. 준공하였다.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요령(행정1부시장 방침 제559호, 2009.11.12.)’ II.3.(위원회 개최 대상사업)에 따르면 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특정제품의 재료원가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순공사원가<sup>9)</sup> 1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가 건설공사에 포함되는 경우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구성<sup>10)</sup>하여 특정제품 선정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 〔표〕 특정제품 선정심사 운영절차도



따라서 공사발주자는 일정금액 이상의 제품이나 전문공사가 수반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의 다수 업체를 시장 조사하여 상호 비교·검토 후 위원회에 검토의견 및 대안을 제시하고, 위원회에서는 제시된 안전에 대해 가격의 적정성, 구매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제품(공법, 기술)이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9) 순공사원가 : 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의 합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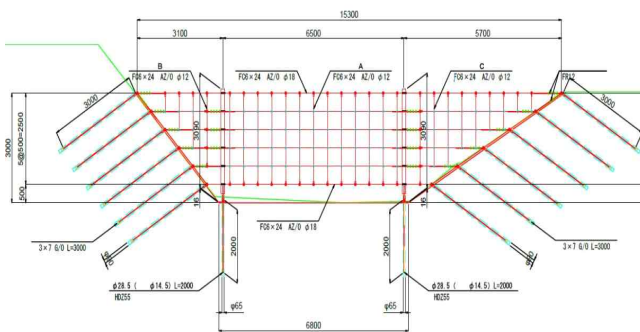
10) 위원장 포함 5~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실·본부의 국장, 위원은 5급(과장), 6급(팀장)으로 함(외부전문가 위촉 가능)

※ 공사발주자의 추천안이 채택된 경우 : ‘원안채택’ 또는 지적사항 보완조건으로 ‘조건부 채택’  
추천안 이외의 대안이 채택된 경우 : ‘제0안 채택’

그런데 발주자는 산사태취약지역의 계류(溪流) 상류구간에 토석류의 흐름을 차단하는 방재시설(횡공작물)을 아래 [그림 1]과 같이 ‘고강도 유연성 네트(너비 15m, 높이 3m)’ 제품으로 설계하면서, 제품의 재료원가가 100,532천원임에도 특정제품 선정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았다.

그 결과 특정제품이 유사제품과 비교하여 경제성이나 성능에서의 우수성이 입증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사과정 없이 그대로 설치되어 특혜소지의 우려 및 행정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림 1] 고강도 유연성 네트 설계도면 및 설치 현황



▲ 설계도면



▲ 고강도 유연성네트 설치(길이 15m, 높이 3m)

##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고강도 유연성 네트 설치비용이 특정제품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인데도 심의를 이행하지 않고 선정한 사유에 대해 관련 법규를 인지하지 못하여 심의를 미이행하게 되었음을 시인하고 있으며, 향후 특정제품 선정심사 미이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조치할 사항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은

앞으로 특정제품 선정심사 미이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자 등 관계자에 대하여 지도·교육, 신분상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